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777
----------	------

2017년 4월 19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7년 4월 11일, 주찬식 의원 (찬성자 9명)
- 나. 회부일자 : 2017년 4월 11일
- 다. 상정일자 : 제273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17년 4월 19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주찬식 의원)

가. 제안이유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자치구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금 관련 사업에 대한 심의기준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포함함으로써 기금운용에 대한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는 등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함.

나. 주요골자

- 1)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단서조항인 ‘단, 유지관리는 제외’를 삭제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1호바목).
- 2)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포함하도록 함.
(안 제5조제2항제10호).
- 3)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제2항의 사용에 대한 자치구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내용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 4) 재난관리기금 주요항목 지출금의 변경 등에 대한 심의기준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포함하도록 함.
(안 제8조제1항제4호)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개요

- 본 개정안은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의 용도 중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의 신규설치가 아닌 유지관리는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연말에 차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자치구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재난관리기금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 기금 관련 사업에 대한 심의기준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포함함으로써 기금운용에 대한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는 등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재난관리기금 운용 현황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목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2003년 설치되어, 구호계정과 재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되고 있음.

[표 2] 연도별 재난관리기금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조성액(A)			집행액(B)	순조성액(A-B)	누 계
	계	출 연 금	기 타			
1997	23,075	22,710	365	1,108	21,967	21,967
1998	29,549	26,011	3,538	22,750	6,799	28,766
1999	42,250	36,587	5,663	17,539	24,711	53,477
2000	43,816	38,413	5,403	10,648	33,168	86,645
2001	55,470	40,544	14,926	73,262	- 17,792	68,853
2002	53,579	43,175	10,404	25,289	28,290	97,143
2003	57,357	49,461	7,896	23,167	34,190	131,333
2004	64,736	58,197	6,539	31,095	33,641	164,974
2005	72,743	65,807	6,936	18,969	53,774	218,748
2006	77,702	69,444	8,258	49,510	28,192	246,940
2007	83,024	70,092	12,932	42,349	40,675	287,615
2008	87,339	73,118	14,221	86,739	600	288,215
2009	89,567	78,052	11,515	98,779	- 9,212	279,003
2010	181,289	82,225	99,064	161,531	19,758	298,761
2011	210,490	81,607	128,883	197,373	13,117	311,878
2012	111,290	80,305	30,985	212,887	- 101,597	210,281
2013	93,389	86,546	6,843	53,501	39,887	250,168
2014	85,091	78,387	6,704	132,597	- 47,506	202,662
2015	90,967	86,532	4,435	42,333	48,634	251,296
2016	94,644	90,708	3,936	44,783	49,861	301,157
2017	108,368	100,500	7,868	70,832	37,536	338,693

-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재난계정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예탁금원금회수 등 수입부문 수입증가가 예상되며 2016년도 계획대비 1,232억 2천만원(43%)이 증가한 4,095억 26백

만원 규모이고, 이 중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등으로 지출되는 비용자성사업비(고유목적사업비)는 708억 26백만원 규모임([표 2] 참조).

- 2017년 재난관리기금 비용자성 목적사업비 운용 세부계획을 살펴보면, 전체 708억 26백만원 중 재난예방사업에 350억 76백만원, 재난발생에 따른 응급복구사업에 350억원, 연구용역사업에 7억 5천만원을 책정하고 있는 상황임([표 3] 참조).

[표 3] 2017년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지출계획 내역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2016년	2017년	증감 (증감률)		2016년	2017년	증감 (증감률)
계	286,306	409,526	123,220 (43)	계	286,306	409,526	123,220 (43)
기금전입금	90,708	100,500	9,792 (10.8)	비용자성사업비 (고유목적사업비)	70,566	70,826	260 (0.4)
용자금회수	17	2,174	2,157 (12,688.2)	기본경비	6	6	0
예탁금 상환금	10,000	46,666	36,666 (366.7)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181,648	254,491	72,843 (40.1)	예치금	215,734	338,694	122,960 (57)
이자수입	3,783	5,545	1,762 (46.6)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150	150	0	기타지출	0	0	0

[표 4] 2017 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고유목적 사업비 운용 세부계획

(단위 : 백만원)

비목	세부사업명	사업개요	금액
비용자성 목적사업비	계		70,826
	재난예방사업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가 필요한 사업	35,076
	응급복구사업	재난 재해 발생 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35,000
	연구용역사업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750

■ 주요 골자별 의견

가. 용도 관련(안 제5조제2항제1호바목, 안 제5조제2항제10호)

- 안 제5조제2항제1호바목은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대해 단서조항인 ‘유지관리 제외’를 삭제함으로써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이 파손된 경우 재설치하는 등의 유지관리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당초 단서조항의 설치 취지는 신규설치만 기금에서 지원하고 유지관리는 건물주가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으나, 지하주택 거주자 대부분이 세입자인 경우가 많아 설치 이후 방치되는 경우가 대다수로, 침수로부터 지하주택 세입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지하주택의 침수방지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원활히 하는 것이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으로 판단됨.
- 다만, 이러한 조치가 지하주택의 건물주가 침수방지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책무를 태만히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서울시는 기금운용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 참고로, 서울시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만2천여 침수취약 지하주택에 물막이판, 역류방지시설, 수중펌프 등 침수방지시설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5천여 가구에 지원할 예정임.

[표 5] 침수방지시설 설치현황(2007년~2016년)

가구수	사업비 (백만원)	시설 구분			
		집수정 (개소)	물막이판 (개)	옥내역지변 (개)	수중펌프 (대)
61,535	71,752	12,589	52,106	124,292	4,182

- 다음으로, 안 제5조제2항제10호는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이외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발생 시 탄력적인 기금운용을 위한 것으로 이해되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시행과정에서 법정용도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나. 기금운용계획 수립 관련(안 제7조제2항)

- 안 제7조제2항은 서울시가 차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기금 사용 등과 관련하여 자치구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그동안 매년 실시해 왔으나 최근 서울시가 기금의 제한적 사용을 위해 수요조사를 기피하는 현상¹⁾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사안임.
-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의 사용을 위한 자치구의 요청건수를 살펴보면 총 351건 2,520억 46백만원 대비 총 246건이 가결되어 1,483억 94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표 5) 참

1) 2017년은 현재까지 자치구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조), 매년 평균 약 70건 504억 9백만원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표 6] 2012~2016년 자치구 수요조사 심의 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심 의 요 청	심 의 안 건	건 수	351	70	44	61	56	120
		금 액	252,046	67,821	26,583	38,273	29,173	90,196
심 의 결 과	원 안 가 결	건 수	141	34	20	25	39	23
		금 액	86,163	39,001	9,332	9,400	20,353	8,077
	수 정 가 결	건 수	95	10	11	19	5	50
		금 액	56,188	6,459	5,311	12,511	4,422	27,485
	조건부 가 결	건 수	10	5	1	4		
		금 액	6,043	2,120	2,292	1,631		
	부 결	건 수	105	21	12	13	12	47
		금 액	103,652	20,241	9,648	14,731	4,398	54,634

(주) 2016년까지는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가 매년 제1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이에 각 년도 제1차 심의내용을 토대로 자료를 구축함

- 자치구의 경우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긴급한 재난예방사업들의 재난관리기금 의존도가 크게 높아져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전 수요조사를 생략할 경우 재난예방시설물 유지관리에 상당한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라 사료됨.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관련(안 제8조제1항제4호)

- 안 제8조제1항제4호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²⁾에 기금 관련 사업에 대한 심의기준을 포함하려는 것인데,
- 이는 서울시가 자체방침 등을 통해 자의적 심의기준을 적용하여 법정용도에 맞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지원 대상에서 임의로 제외하는 등 만일의 편향적 기금운용에 대비하여 제도적 제어장치를

2) ①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②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기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기금운용에 대한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라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2항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제5조 중 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중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재난계정 - 시의 물순환안전국장

제7조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제2항의 사 용에 대한 자치구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중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제8조 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 부위원장은 각각 물순환안전국장 및 복지본부장이 된다.

제8조 중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관리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안전총괄과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요조사 특례) 이 조례 제7조제2항의 개정과 관련하여

2017년도 자치구 수요조사는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 (용도) ① 구호계정의 자금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p>② 재난계정의 자금은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p>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p> <p>가. ~ 마. (생략)</p> <p><u>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단, 유지관리 제외)</u></p> <p>사. ~ 자. (생략)</p> <p>2. ~ 9. (생략)</p> <p><u>10. (신 설)</u></p>	<p>제5조 (용도) ① ----- ----- -----.</p> <p>② ----- ----- -----.</p> <p>1. ----- -----</p> <p>가. ~ 마. (생략)</p> <p><u>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u></p> <p>사. ~ 자. (생략)</p> <p>2. ~ 9. (생략)</p> <p><u>10.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제6조 (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p>	<p>제6조 (기금관리공무원) ----- ----- ----- -----</p>

<p>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가. (생략)</p> <p><u>나. 재난계정 - 시의 안전총괄본부장</u></p> <p>2. (생략)</p>	<p>-----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u>나. 재난계정 - 시의 물순환안전국장</u></p> <p>2. (현행과 같음)</p>
<p>제7조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u>② (신설)</u></p> <p>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는 각 계정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p>	<p>제7조 (운용계획 및 결산) ① ----- ----- ----- ----- ----- -----.</p> <p><u>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제2항의 사용에 대한 자치구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u></p> <p>③ ----- ----- ----- ----- -----.</p> <p>④ -----</p>

<p>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에 첨부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 ----- -----.</p>
<p>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 3. (생략)</p> <p><u>4. (신설)</u></p> <p>② (생략)</p> <p><u>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 부위원장은 각각 안전총괄본부장 및 복지본부장이 된다.</u></p> <p>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p> <p><u>1. 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안전총괄과장</u></p> <p>2. ~ 3. (생략)</p> <p>⑤ ~ ⑥ (생략)</p>	<p>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u>4.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u></p> <p>② (현행과 같음)</p> <p><u>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 부위원장은 각각 물순환안전국장 및 복지본부장이 된다.</u></p> <p>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p> <p><u>1. 재정관리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안전총괄과장</u></p> <p>2. ~ 3. (현행과 같음)</p> <p>⑤ ~ ⑥ (현행과 같음)</p>